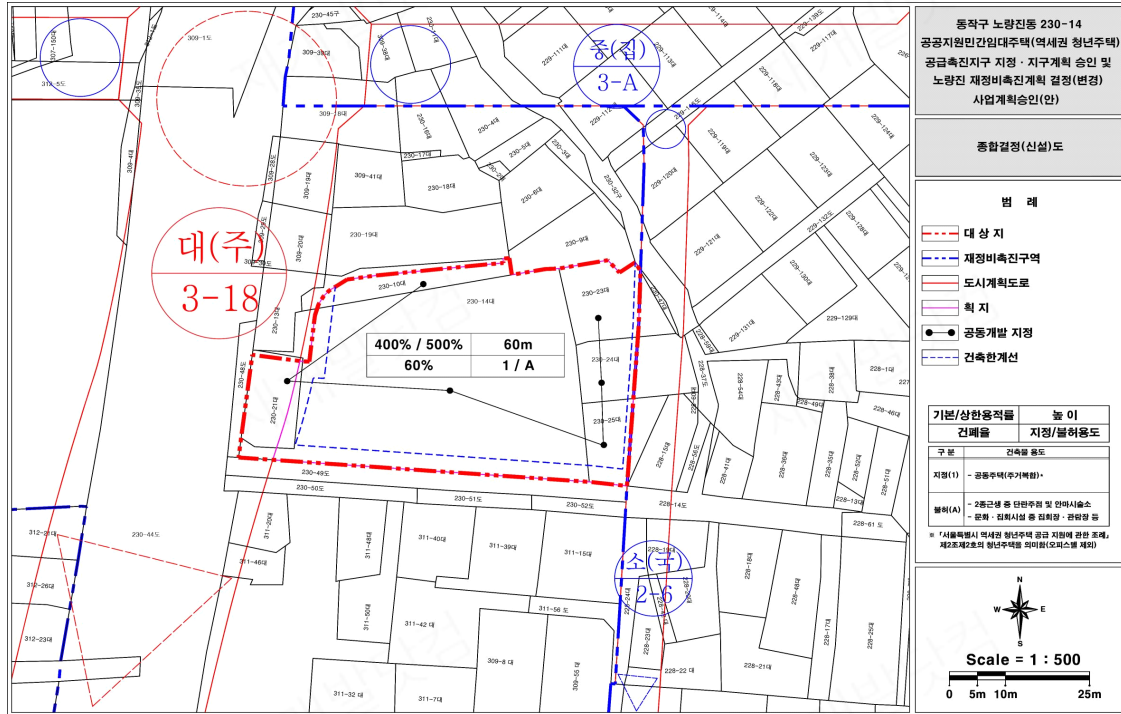


□ 종합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1587호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최목적 : 흑석재정비촉진지구(흑석7구역)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11. 17. (화) 15:00
 - 장 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 병행 실시
 - 온 라 인 : 동작구 유튜브 채널(유튜브에서 '동작구청' 검색 또는 <http://asq.kr/laixlMgWtf4EW> 접속)
 - 오프라인 : 흑석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 강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개요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 기정 : 공공청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861.2㎡)
 - 변경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861.2)
4. 의견제출
 -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온라인 공청회에 접속하여 채팅창 댓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2020.11.17.(화)~2020.11.24.(화)까지 서면(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도시개발과 개발기획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방역조치사항

- 공청회 현장 참석은 인터넷 사용불가자에 한해 허용하며,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을 경우 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 마스크·장갑 착용, 손소독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20인 제한)
- 공청회 현장 참석자에 한해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2주간 증상확인(유선전화)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증상확인 미동의자는 현장참석 불가)
-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방역조치에 불응할 경우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동작구 도시개발과(☎02-820-926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1589호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과-20902(2020.9.23.)호로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시정의무자	과세대상	위 반 사 항	비 고
1	박*순	사*동 1*7-9	- 주차통로 미확보로 인한 지상1층 옥외주차장 2대분 기능미유지	-

2. 공고기간 : 2020.11.5. ~ 2020.11.19. (14일간)

3. 처분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4.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20.10.22.까지 (동작구청 건축과)

5. 처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공고 기한 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를 우리 구(참조: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 ·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